

산림·임업에 관련된 국제환경회의와 협약 그리고 대응방안

유 병 일 / 임업연구원
등 박

20 세기도 얼마남지 않은 요즈음 전세계는 21세기의 새로운 세계질서구축을 위하여 과거의 무역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무역질서확립에 모두 비쁜 형편이다. 「우르과이라운드」를 통하여 국내의 산업구조조정작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방에 따라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농업분야와 농촌사회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가지 시책이 강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우리는 또다른 국제질서개편작업 즉 「그린라운드」와 「블루라운드」협상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다. 즉 세계시장구조와 무역구조가 개편됨에 따라 필수적으로 야기되는 탈공업화, 탈도시화현상 때문에 국가간, 지역간 환경문제 및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세계각국간에 이에 대한 조정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고, 한편으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문제나 노동문제는 남북문제의 일환으로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마찬가지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이해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힘든 실정이다.

이중에서도 우리 산림·임업관련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산림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둘러싼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국토녹화」라는 지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난 70년초부터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각국은 여러차례의 다양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이견을 조정하고, 단기간내에 여러 종류의 협상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로간의 이해가 상치되는 경우가 많아 어떤 협상이 어느 정도나 진척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구환경문제와 연계된 산림과 임업의 동향과 함께 왜 이와 같은 각종 국제협약과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내용은 어떤지를 간략히 살펴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1. 지구환경문제와 산림·임업

지구환경문제는 생태계로서의 환경의 유

한성을 초월한 인간활동의 급격한 확대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있는데, 온난화·오존층의 파괴·산성우·열대림 등 세계산림의 감소와 악화·야생생물종의 감소·사막화 등 다양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지구환경문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하여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안되는 인류가 당면한 최대 과제 중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구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산림의 적절한 이용, 관리, 정비, 보호 등의 산림보전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에 이와 같은 지구환경문제 가운데서도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문제는 온난화 문제라 할 수 있다. 온난화의 발생은 지구의 장구한 역사와 비교해서 극히 짧은 기간에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등의 농도상승에 따른 온실효과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바다표면 상승에 의한 저지대 도시의 침수위협, 자연생태계에 있어 종의 분포의 변화, 기후변동 등에 의한 농림업생산분야 등의 심각한 타격 등도 우려된다.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상승은 인류의 산업활동에 의한 석유·석탄 등의 화석연료의 소비가 주원인이지만 세계의 산림, 특히 열대림의 감소도 관계된다.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의 보고서에 따르면, 열대림의 손실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방출량(탄소환산)의 평균치는 연간 약 16억톤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열대림의 손실은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전세계의 이산화탄소의 방출량 가운데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을 점유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의 흡수·고정원자체의 감소라고 하는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세계의 산림면적은 1990년 현재 40억 3

천만ha로서, 이중 47%가 선진지역에, 53%가 개발도상국에 있다. 이것을 10년전과 비교한다면 선진지역은 2% 증가한데 반하여, 개발도상국은 열대림을 포함하여 5% 감소해서, 전체로는 2%가 감소하였으며, 산림의 상태도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산림자원평가 1990년프로젝트」에 의하면, 열대림은 1990년 현재 17억ha에 분포하고 있는데, 지구 전체 육지의 탄소저장량(탄소환산으로 식생에 5,000억톤, 토양에 1,380억톤)의 약 절반을 가지고 있으며, 알려진 생물종(약 150만~170만종)의 절반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지구환경보전 측면에서 중요한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열대림은 1980년부터 1990년까지 10년 사이에 9%가 감소해서 매년 한번도 전체 면적에 가까운 17백만ha가 없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100년 후에는 열대림 전체가 없어진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또한 한대림, 아한대림, 온대림 등 열대림이외의 산림은 세계산림의 55%를 점유하여 1990년까지의 10년간에 1%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유럽 산림의 20%가 산성우와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를 입는 등 지역에 따라서는 산림의 악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국제환경협약의 개관과 역사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세계각국의 관심은 '72년 유엔이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한 이후 환경과 개발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됨에 따라 가속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노력 결과 '89년 제44차 UN총회에서

「인간환경선언」 채택 20주년을 맞이하는 1992년에 환경개발회의의 소집을 결의하게 되었고, 지구환경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표 지구산림환경관련 주요 국제회의의 개요

회의일자 및 장소	회의명칭 및 주요합의내용
1972. 6. 5 - 16 스웨덴 스톡홀름	유엔 (UN) 인간환경회의 「하나뿐인 지구」를 테마로 인간환경의 보전과 향상에 관해서 세계인 모두를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은 모든 정부의 의무라고하는 「인간환경선언」과 함께 26개의 원칙과 109개의 권고로 구성돼 있는 「인간환경행동계획」을 채택하고 환경보호역사에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1982. 5. 10 - 18 케냐 나이로비	유엔 (UN) 인간환경회의 10주년기념회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인간환경회의의 1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본회의는 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선언 및 행동계획을 실시하기위해 강구되어진 조치들을 검토한 결과, 지금까지 달성된 성과를 다시 한번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각국 정부와 국민에 대하여 세계환경의 현상에 대하여 커다란 우려를 표명하고, 또한 세계환경을 보전 내지 개선시키기 위하여 전세계적, 지역적 및 국내적인 노력을 보충강화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한 「나비로비선언」을 하였다.
1985. 6	7회 열대림개발위원회 「열대림행동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주목적은 열대림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국별로 계획수립 및 실시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각국과 UN이 공동으로 조치해야만 하는 우선분야로서 임업·임산업의 개발, 열대림생태계의 보존 등 5개분야에 대하여 행동지침을 정하였다.
1989. 9. 일본 동경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동경회의 일본정부와 UNEP가 공동주최하였다. 과학자, 국제기관의 기관장 등 57인의 지구환경문제관련 인사가 참가하여 지구환경 문제에 관한 최신의 과학적 소견을 집약함과 동시에 금후의 대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열대림보전에 관한 행동도 권고하였다.
1989. 12. 미국 뉴욕	44차 유엔 (UN) 총회 1992년 6월 세계환경일의 시기를 결정하고, 정부고위자가 참가하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환경개발회의 (UNCED)를 1992년 개최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 UN결의에 따라 각국이 지구서미트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20년간에 걸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배경으로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一名 지구서미트)」가 개최되어, 인류의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인류와 국가의 기본행동원칙을 정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一名 리우선언)」과 세부실천계획으로서 「의제 21」을 채택하였다.

리우선언은 에너지, 토지, 자원관리, 생물다양성 보호 및 여성, 교육 등 경제, 사회제도 전반에 걸친 총체적 규범으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최대쟁점사항인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에 대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국의 개발권리를 확인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리우 선언」과 「의제21」의 이행을 평가 감시하기 위하여 지속개발위원회(CSD)를 유엔산하에 설치하여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유엔의 총괄적 관리체제구축을 가능토록 조치하였다.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인 산림보전원칙과 화석원료 사용규제원칙을 규정한 「기후변화협약」 및 생물종의 다양성과 유전자원의 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협약」도 채택하고, 산림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최초의 세계적 합의인 「산림원칙성명」도 채택하였다.

이 「성명」이 채택된 경위를 보면,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등의 차원에서 산림에 관한 국가주권과 개발이용권을 주장한데 반하여 선진국은 지구환경의 보전차원에서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포함한 지구전체 산림의 보전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산림에 관한 국가주권과 개발이용권이 인정되고, 전체국가, 특히 선진국에 의한 녹화노력의 필요성 등이 합의되었다.

이와 같이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규제는 점차 가시화되어가고 있는데 규제대상 분야는 크게 ① 대기보전과 기후변화방지, ② 토양 및 산림자원보전, ③ 생태계보전, ④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보전, ⑤ 유해폐기물 처리 및 관리 등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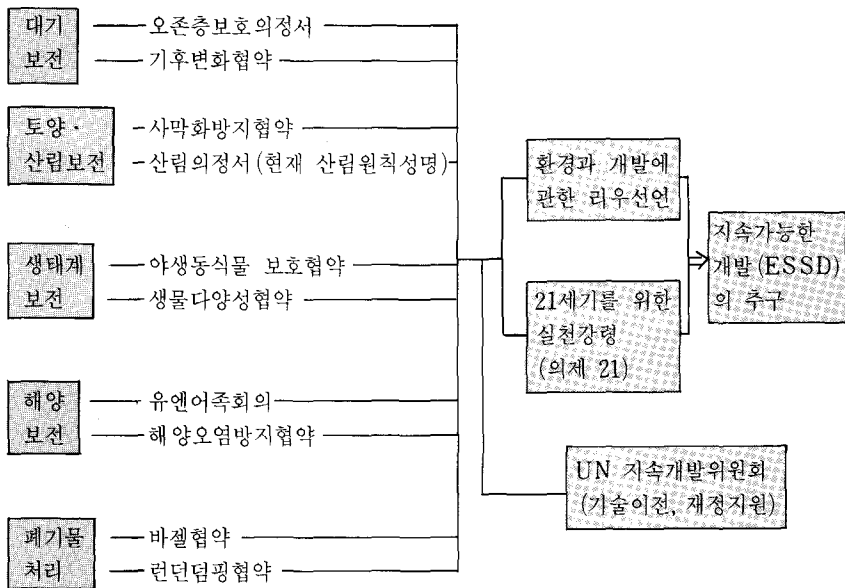


그림 국제환경협약의 개관

첫째, 대기보전분야에서는 '89년에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발효되어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하였으며, '92년도 「리우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어 구체적인 온실가스규제방안이 논의중에 있다. 둘째, 토양·산림보전분야에서는 '92년 「리우회의」에서 「산림원칙성명」이 채택되고 「산림의정서」 제정협상이 본격화될 전망과 함께, 「사막화방지협약」도 '77년 「UN사막화방지회의」가 개최된 이래 수차례의 협상끝에 '94년 6월경에 채택될 예정이다. 셋째, 생태계 보전분야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보호협약」(一名 「CITES(사이테스) 또는 워싱턴협약」)이 '75년부터 발효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93년 7월 가입한바있다. '92년 「리우회의」에서는 「생물다양성 협약」이 채택되었다. 이외 해양보전분야와 폐기물처리분야에서도 이미 해양오염방지협약, 바젤협약 등 각종 협약이 체결되어 효력이 발효중에 있다.

이와 같은 각종 협약은 모두 지속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어 국가간에 이와 같은 국제 환경질서를 엄격히 준수해 나간다면 후세대에는 지금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일단 조약이 체결되면 이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3. 각종 국제협약의 세부내용

1) 「의제 21」중 산림관련부문의 개요

「의제 21」이란 21세기를 위한 인류의 논의과제란 뜻에서 명명되었으며, 전문(1장)

과 1부 사회경제부문(2장~8장), 2부 자원의 보호 및 관리부문(9장~22장), 3부 주요그룹의 역할 강화부문(23장~32장) 4부 이행수단부문(33장~4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관련내용은 이중 2부 11장 산림황폐방지와 13장 지속가능한 산지개발 등에 집중되어 있다.

1. 모든 종류의 산림의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확보를 목적으로 다음 4가지의 계획분야에 대하여 행동의 기초, 목적, 행동실시수단을 명기하도록 한다.

(1) 산림의 다양한 역할·기능의 유지

- 산림관계행정기구의 개선·강화
- 국가적 목표의 설정 산림계획의 책정
- 산림의 다양한 기능·역할에 대한 보급개발
- 산림교육·훈련의 강화

(2) 산림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강화 및 황폐지의 녹화

- 조림등에 의한 산림지역의 확대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확립
- 보호림제도의 창설 확대
- 황폐지 등의 복구
- 종합조림계획의 전개 강화
- 화전농업에의 대응
- 산림보호대책의 강화

(3) 산림으로부터의 재화와 서비스의 효과적 이용의 촉진

- 투자환경정비 등을 위한 연구·분석
- 임산물벌채방법의 개선
- 목재 및 비목재가공산업의 발전
- ITTO(국제열대목재기구)행동지침 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무역정책의 조화
- 산림기능평가의 개선

(4) 산림 및 관련계획의 작성·평가능력의 확보 및 강화

- 산림의 평가 및 정기적인 재평가 실시
 - 산림계획등의 정기적 점검시스템의 확립
 - 산림과 탄소흡수, 기후변동등과의 상호관계 연구실시
2. 각 계획분야에 관련한 정보의 수집·정비 국제사회에의 기술협력 등의 필요성과 함께 FAO, ITTO, UNEP 등 관련국제기구의 강화와 협조를 도모한다.
3. 산림협약제정에 대해서는 「원칙성명의 실시를 근거로 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종류의 적절하게 국제적으로 합의된 협약의 필요성과 실시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한다.」라고 정리한다.

2) 「산림원칙성명」의 개요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산림원칙성명」의 정식명칭은 「산림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전세계적 합의를 위한 법적 구속력없는 제 원칙성명」이다.

산림은 이산화탄소의 흡수원 및 산소의 공급원일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계 보호 등 환경보전을 위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산림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리우회의」에서 「산림의정서」채택을 목표로 4 차례의 준비회의를 개최하면서 사전의견조정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선진국이 산림보전을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산림의정서」의 제정을 강력히 주장한 반면, 개발도상국은 경제개발을 위한 산림벌채의 불가피성과 목재수출감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산림의정서」제정에 반대를 하였다. 따라서 「리우회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쟁점사항을 절충하여 완곡한 표현으로 합의된 「산림원칙성명」을 채택하게 되었다.

산림원칙성명의 주요내용은

첫째, 각국의 산림자원과 산림개발에 대한 주권적 권리인정과 타국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토록 하며,

둘째, 산림자원에 대한 후세대 사람들의 사회적·경제적·생태적·문화적·정신적 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영체제를 확립하도록 하며,

셋째, 산림정책을 국가정책에 우선적으로 반영시키고 산림투자에 대한 유인조치를 강구토록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국가지침을 개발하고, 산림환경의 편익과 비용을 산림정책 및 시장기능에 반영시키며, 산림면적의 확대와 임업생산력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인공림의 적극 조성 및 산림개발에 따른 산림영향평가의 실시, 산림생태계를 위협하는 오염물질의 규제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개발도상국의 산림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활동에 대한 재정 및 기술자원을 하도록 한다.

다섯째, 국제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임산물의 자유로운 교역을 추진하며,

여섯째, 산림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연구, 교육,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전문)

1. 원칙성명은 산림에 관한 최초의 세계적 합의다.
2. 원칙성명의 이행에 노력한다.

3. 변함없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동 원칙 성명의 적절성을 항상 점검한다.
4. 산림의 건전한 경영과 보전이 환경전체에 있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한다.

(원칙)

1. 산림문제를 사회경제발전의 권리, 환경등을 감안하여 총체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종의 다양성, 문화 등의 총합자원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2. 산림을 이용하는 주권적 관리와 책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3. 산림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기본이다.

(1)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도원칙의 필요성

(2) 보호림과 평가의 필요성

(3) 세계녹화에의 노력

(4) 환경비용을 포함한 산림외부경제의 내부화

4.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경영달성 노력에의 지원

(1) 임산물시장접근의 지원

(2) 신규 내지 추가적 자금제공과 기술이전

(3) 풍부한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의 경제적 지원

5. 임산물무역

(1) 부가가치임산물에 대한 시장접근기회 제공

(2) 관세장벽의 삭감 또는 철폐

(3) 임산물의 사용제한금지

3) 「기후변화협약」의 개요

(목적)

인류의 활동에 따라 기후계에 위험한 영향이 주어지지 않는 수준에서, 대기중의 온실효과가스의 농도안정화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원칙)

1. 공통 그러나 차등화된 책임·능력에 의거 기후계를 보호한다.
2. 특별한 필요성 및 상황(특히 개발도상국)에 충분히 배려한다.
3. 예방적 조치를 취한다.
4.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할 권리를 보유한다.
5.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는 국제경제체제촉진에 협력한다.

(의무사항)

가. 모든국가 해당

1. 온실효과가스의 배출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작성 제출
2. 구체적 대책을 포함한 국가정책 및 계획의 수립·실시·공표
3. 농업, 임업을 포함한 각분야에서 온실효과가스를 감소시키는 기술을 개발보급
4. 산림등의 흡수 저장원을 적정관리·보전·강화
5. 대응조치의 마이너스영향을 최소화하도록하고, 영향평가등을 실시
6. 기후변동의 원인, 영향의 연구, 체계적 관측의 촉진 및 협력
7. 실시에 관한 정보를 조약체결국회의에 통보

나. 선진국 해당

① 정책·조치

- 온실효과 가스의 양을 1990년대말까지

중전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식해서 각국의 상황이 상이한 것을 고려하고 기후변동완화의 국가정책·대응조치를 채택하도록 한다(타국과의 공동실시 가능).

② 정보의 제출·심사

•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하여 정책·조치 및 예측되는 배출·흡수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 이와 같은 정보는 조약체결국회의에서 정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한다.

③ 재정지원

• 개발도상국이 정보의 통지의무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합의된 경비에 합당한 신규 내지 추가적인 자금을 제공하도록 한다.

• 또한 기후변동의 악영향에 대하여 개발도상국이 대응하는 경비를 지원한다.

④ 기술지원

• 특히 개발도상국이 본조약의 규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상 건전한 기술과 지식 이전을 도모하여 이용되도록 하고,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실행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연구·체계적 관측)

관련되는 국제적 및 정부간의 계획, 네트워크, 조직을 적절하게 지원하도록 하는데, 특히 개발도상국의 체계적 관측, 국내의 과학기술연구의 능력과 수용력을 높이기위한 국제적 및 정부간의 노력을 지원한다.

(교육·훈련·계몽)

기후변동과 그 영향에 관한 교육·계몽사업계획의 책정·실시, 과학·기술·관료요원의 훈련 등을 실시한다.

(보조기관)

1. 과학적 내지 기술적 조안을 위한 보조기관
과학적 조치의 평가와 조안을 담당한다.
2. 실시를 위한 보조기관
조약의 효과적인 실시의 평가·심사에 있어 각국을 지원한다.

(자금구조)

지구환경금융(GEF)을 잠정적인 자금운영 기금으로 하고 제 1회 조약체결국회의에서 그 조치를 지속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실시에 관한 정보통보)

각국은 다음의 정보를 조약체결국회의에 통보한다.

가. 모든 국가 해당

•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 및 흡수량 국가 통계작성

• 시책의 설명 등

나. 선진국 해당

• 선진국의 서약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택한 정책·조치의 상세한 설명

• 이 조치에 의한 배출, 흡수에 의한 효과 概算

• 자금·기술지원조치 등

4) 「생물다양성협약」의 개요 (목적)

생물다양성의 보전·지속적 이용 및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 내지 공평한 배분

(원칙)

각국은 자국자원을 자국의 환경정책에 따라 개발한 주권을 보유하며, 타국 또는 관할외 지역환경에 해를 끼치지 아니한다.

(각국조치)

1.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의 국가전략수립
2. 중요한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책정 및 모니터링, 자료의 정리
3. 보전조치
 - (1) 생태지역내 현지보전
 - 보호구 등의 체계확립
 -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규제 관리
 - 필요에 따른 회복의 계획과 실시
 - 필요한 법제도의 정비 등
 - 개발도상국에 대해 위에 언급한 것에 대한 지원
 - (2) 생태지역외 보전
 - 원산국에 있어서의 연구시설의 설치
 - 멸종위기종의 재방출
 - 생물자원의 수집규제·관리등
 - 개발도상국에 대해 위에 언급한 것에 대한 지원
4. 구성요소의 특정·보전·이용의 교육·훈련 및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의 이해 촉진
5. 영향평가제의 도입
6. 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활동의 규제·긴급대응체제정비 및 외국과의 정보교환·협력
7. 조약체결국회의에 실시조치 및 효과에 연관된 보고

(상호관계)

1. 재정지원
 - 선진국은 조약실시를 위하여 합의된 추가 비용에 응분의 신규 내지 추가자금을 공여한다.
 - 조약체결국회의에서 결정되기 전까지 지구환경기금(GEF)을 잠정적인 자금

운용 기금으로 한다.

2.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 권한은 해당정부에 귀속한다.
 - 상호합의된 조건으로 사전통지를 수반한 동의를 전제로 한다.
 - 과학연구는 유전자원제공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연구결과와 성과와 이익은 유전자원제공국과 적정배분을 위해 상호합의된 조건으로 적정조치를 취한다.
3. 기술에의 접근 및 기술이전
 - 생물다양성의 보전·지속적 이용, 기타 유전자원 이용기술에의 접근, 기술이전을 약속하도록 한다.
 - 조건
 - 공평 내지 최고로 유리한 조건, 단 상호 합의한 경우는 양허적 내지 특별적 조건
 - 특허 및 지적소유권에 관계된 경우는 그것들의 적절 내지 효과적인 보호를 고려한 모순없는 조건
 - 유전자원 제공국에 합의된 조건으로 특허, 지적소유권을 포함한 기술에 접근·이전시키기 위하여 적정조치를 취한다.
4. 기술·과학협력
 - 인재개발, 시설설치, 전문가교류, 공동연구, 합병사업의 협력
5. 생명기술공학의 취급 및 이익분배
 - 유전자원제공국이 생명기술공학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정한 조치를 취한다.
 - 유전자원제공국이 합의된 조건으로 생명공학기술에 유래하는 성과와 이익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 생명공학기술에 근거한 개변생물을 제

공하는 자연인, 법인은 안전규제, 영향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이들을 도입하는 국가의 요구에 응하여 제공토록 조치한다.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에 악 영향을 미치는 생명공학기술에 유래하는 개변생물의 이용과 방출에 관한 위험을 관리·규제하는 수단을 확립·유지한다.

4. 금후 대응방안

앞에서 지구환경문제와 이에 관련된 산림·임업문제, 이에 관련한 국제환경악화방지를 위한 각종 국제환경회의와 협약의 내용과 역사, 그리고 지구환경문제에 획기적 계기가 된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결정된 「의제 21」과 「산림원칙성명」,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국제환경문제와 결부되어 대기보전, 토양·산림보전, 생태계보전, 해양보전, 폐기물처리분야의 5개분야중 대부분의 부문에서는 이미 협약이 체결되어 효력이 발효중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미가입된 「생물다양성협약」의 경우도 '94년 상반기중에는 가입이 완료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토양·산림보전분야의 경우는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사막화방지협약」도 20여년간의 협상을 하고도 아직 협약이 체결이 안된 상태이며, 「산림의정서」 체결도 금년부터 협상을 시작해야만 할 형편이

다.

따라서 우리 산림·임업부문이 대처해나가야 할 협상부문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의 빈약한 산림자원 때문에 국내사용목재의 85%를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세계 2위의 목재 다량수입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적으로 산림관련 국제협약체결이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야만 한다.

또한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산림관련 환경연구강화와 임업정책을 연구 개발하여 ①산림의 온실 가스 흡수저장능력에 대한 과학적평가, ②탄소저장능력이 높은 수종 및 산림경영기법의 개발, ③산림자원의 효율적보전을 위한 산지이용체계구축, ④산림의 타용도전환억제, ⑤산림내 야생동식물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강화, ⑥기후변화가 한반도의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규명, ⑦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개발, ⑧목재 소비패턴의 변화도모 ⑨해외조림사업에 의한 온실가스흡수원 조성확대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한 국내경쟁력 강화를 모색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노력이 국내외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어나간다면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내의 관심제고를 기화로 산림분야의 전문화·과학화도 가속되어 산림관리 및 경영분야는 전에 비하여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국내 타산업과 비교하여도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며, 임업행정 역시 각광받는 분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정당한 소득, 알뜰한 씬씀이